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외 재산은닉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29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해외 재산은닉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석준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9. 20.
3. 회 부 일 : 2024. 9.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대상기관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나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얻을 수 없어 재산은닉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¹⁾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6).

1) 예금보험공사의 자료 제공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안은 지난 본회의(2024.09.26.)에서 이미 가결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음.

Ⅲ. 검토의견: 해외 재산은닉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이고 이행기가 도래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부실관련자 중 해외에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6(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① 공사는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이고 이행기가 도래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부실관련자 중에서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의 경우 그 인적사항·채무액 등(이하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액은 모든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액의 합계를 말하며, 이자 및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체된 채무의 내용에 관한 다툼으로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명단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대상 부실관련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 선정, 소명내용 심의 등 명단공개에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공사는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 부실관련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게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며, 통지 방법 등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²⁾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⑥ 제5항의 소명기간이 경과한 후 공개대상자의 소명내용 및 채무액의 변제실적 등을 고려하여 명단공개심의위원회에서

현행	개정안
	<u>재심의한 후 공개대상자를 확정한다.</u> <u>⑦ 제6항의 부실관련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u> <u>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제1항의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 공개대상선정 절차, 공개 기간 등 세부사항 및 명단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현행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³⁾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책임 추궁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실관련자의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⁴⁾

□ 그러나, 해외 보유 재산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가 관련 자료를 얻기 어려워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추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하 생략)
-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이하 생략)
- 3) “부실관련자”란 ① 부실금융회사등의 전직·현직 임직원, ②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업무집행지시자), ③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및 ④ 그 밖의 제3자(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말함(「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
- 4)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자료제공의 요구) ① 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적용한다.

□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실관련자의 자진 변제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예금보험기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명단공개제도는 대상자의 명예 및 신용에 타격을 주는 제재적 성격의 제도로써 프라이버시권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해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명단공개요건 비교) 체납 또는 채무불이행 관련 명단공개제도는 다양한 법률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공개요건과 개정안에 따른 요건을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조세나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성격의 경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 기간 및 금액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조세 또는 건강보험료 등 체납자 명단공개 입법례 >

관련 법률	운영기관	채권 유형	요 건
국세징수법	국세청	조세	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이 2억 이상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법	지방자치단체	세외 수입금	①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 이상
국민연금법	건강보험공단	연금보험료	① 납부기한 익일부터 1년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2천 이상인 ② 사업장가입자
국민 건강보험법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① 납부기한 익일부터 1년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 이상

○ 반면, 양육비, 임금, 공사대금, 전세보증금 등 민사채권 관련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① 채권 회수를 위해 여러번의 법원판결·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이 있었음에도 ② 상당한 기간 동안 ③ 고액의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최후 수단으로서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사인 간의 문제인 민사채권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채무자 명단공개로 통해 개입하는 사안이므로, 채권자이지만 사회적 약자(아동, 근로자, 수급사업자, 임차인 등)에 해당하여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단공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채무불이행 관련 명단공개 입법례와 개정안 비교 >

관련 법률	운영기관	채권 유형	요 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자원에 관한 법	여성가족부	민사채권 (양육비)	①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② 일시금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결정을 받고도 채무불이행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민사채권 (임금)	① 공개기준일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이상 유죄 확정 ② 공개기준일 1년 이내 임금 체불 총액 3천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국토교통부	민사채권 (공사대금)	① 3년간 하도급대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행정 처분을 받은 자 중 ② 체불 총액 1천 이상
주택도시 기금법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민사채권 (전세보증금)	① 임차보증금 미변제로 구상채무 발생 ② 구상채무 발생일 이전 3년 이내에 별개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사실 존재 ③ 공사의 합산 구상채권액 2억 이상 ④ 구상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효력발생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보험공사	민사채권 (부실책임)	① 채무이행일부터 2년 경과 ② 채무액 2억 이상

○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명단공개의 요건은 민사채권 관련 채무불이행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① 부실(우려)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액 합계가 2억원(이자·비용 제외) 이상인 경우로서 ② 이행기 도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부실관련자로만 규정되어 있어, 여러차례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했고, 최후 수단으로서 명단공개제도를 활용한다는 측면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 ‘부실관련자 중에서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를 명단공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포괄적이고 재산 인정 여부의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타 입법례와 예금보험기금 보호 필요성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금융위원회는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및 부실관련자의 자진 변제 유도를 위해 명단공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 개정안은 ‘해외 재산 보유가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만을 공개 대상으로 하는데, 국내에 재산을 보유한 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재산 보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을 공개 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13